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12. 5 선고 2024가단257600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 2024. 11. 21.

판결 선고 2024. 12. 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80,958,164원 및 그 중 78,567,620원에 대하여 2024. 5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.9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)

판사송호섭

별지